



제426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사립유치원 폐쇄시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 >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60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 목 차 】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 사립유치원 폐쇄시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 .....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9.

3. 회부연월일 : 2025. 4. 10.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이 폐쇄될 때 유아들을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轉園)하여야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등 유아를 지원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할 때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등).

### Ⅲ. 검토의견

☐ 사립유치원 폐쇄시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등).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 ③<br>(생략)                                                            |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 ③<br>(현행과 같음)                                                                                 |
| ④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 ④ -----<br>-----<br>-----<br>-----<br>-----<br>-----<br>다만,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신설>                                                                                    | 1. 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                                                                                               |
| <신설>                                                                                    | 2.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                                                                                            |
| <신설>                                                                                    |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통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하여야 한다.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치원의 폐쇄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치원의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
|--|-------------------------------------------------------------------------------------------------------------------------------------------------------------------------------------|

현행 「유아교육법」 제8조<sup>1)</sup>는 유치원의 설립과 관련하여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sup>2)</sup>는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

#### 1)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경영자인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사유, 폐쇄 예정연월일을 기재한 학교폐쇄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1의2. 해당 유치원의 설비처리 계획서

2.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 8. 6.>

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폐쇄인가를 신청하고, 교육감은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의견,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치원의 유아 전원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폐쇄인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치원의 폐쇄로 인한 전원조치는 해당 유치원 재원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이를 폐쇄인가 신청 전에 미리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할 때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하여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함으로써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

1. 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의 적절성

2.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3. 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의견

4.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고려 사항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9. 8. 6.>

⑤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8. 6.>

⑥ ~ ⑦ (생략)

⑧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유치원의 폐쇄: 60일

2. 유치원의 위치 변경: 30일

3.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변경: 15일

한편, 현재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sup>3)</sup>을 두고, 해당 규칙에서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유치원 폐쇄 보호자 동의서’, ‘전원 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 원아 보호자에게 유치원 폐쇄 동의를 받아 그 결과도 교육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할 때에는 유치원의 폐쇄 및 소속 원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 시·도교육청별 규칙을 통해서도 달성된 것으로 보이나, 자치법규가 아니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부모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임.

3)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음.

(예)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대한 규칙」

**제3조(폐쇄인가 신청)**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 유치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하며, 교육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6.29.>

1. 유치원 폐쇄 보호자 동의서
2.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3. 해당 유치원의 설비처리 계획서
4.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5.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6.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7.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보호자 동의)** ① 제3조에 따라 폐쇄인가 신청을 하려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속 원아 보호자에게 유치원 폐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 예정인 원아의 보호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호자 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폐쇄인가 신청일 기준 소속 원아가 없는 경우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로 공립전환이 확정되어 폐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6.29.>

1. 유치원 폐쇄 시기를 2월 말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일 기준 소속 원아 중 동학년도 졸업 예정 원아를 제외한 나머지 원아 보호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 <신설 2023.6.29.>
2. 유치원 폐쇄 시기를 학기 중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일 기준 전체 소속 원아의 보호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 <신설 2023.6.29.>

**제7조(원아 전원조치)** ① 제3조에 따라 폐쇄인가 신청을 하려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소속 원아 전부에 대하여 전원(轉園)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 예정인 원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참고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원 조치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4)에서 폐원 2개월 전까지 부모 등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유치원 폐쇄인가 규칙으로 일부 마련되어 있는 학부모 통지 절차를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임.

|              |
|--------------|
| 문 의 처        |
| 02)6788-5192 |

#### 4) 「영유아보육법」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